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영 화 및 비 디 오 물 의 진 흥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온라인동영상서비스(Over The Top)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지정 및 재지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8985호, 2022. 9. 27. 공포, 2023. 3. 28. 시행)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정 신청, 지정 취소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정보통신망으로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정당한 권리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구체화 (비디오물에 기호·부호 등 표시, 사업자 홈페이지 표시 등) (제23조의3)
- 나.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서, 청소년·이용자 보호계획서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신청 관련 서류 제출 등 신청 절차 구체화 (제23조의4)
 - 재지정을 위한 지정 기간 중 지정시 제출한 계획 이행여부, 업무정지 여부, 지정 기간 중 매년 사업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확인 절차

다.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 취소, 업무정지 관련 기준 및 행정처분
후 관보에 공고하는 등 절차 (제23조의5)

라.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안정적·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사업자 지정
및 재지정 등 구체적인 집행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권한 위탁
(제33조의4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실시 예정

3) 행정규제 : 협의 예정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3(정당한 권리의 전자적 표시방법) ① 법 제50조제2항 단서와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”이란 기호·부호·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디지털매체 형태의 비디오물이나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에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4(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)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(이하 “자체등급분류사업자”라 한다)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33조의4제1호에 따라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
2. 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
3. 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2. 사업자등록증

③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3조의4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 제50조의3제4항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
2. 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3. 법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

인할 수 있는 자료

④ 제33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를 위탁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”라 한다)는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·재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업무를 위탁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·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

2. 지정일자, 지정기간 및 지정번호

⑥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업무를 위탁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3항제1호의 계획 작성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5(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) ①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

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27조제3항 본문 중 “제공하는”을 “제공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는”으로, “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37조에 따라 표시한 사항 외에 별표 3”을 “별표 3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4(권한의 위탁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.

1.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업무
2.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업무
3.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
정지 업무

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(초기화면 이후와 끝화면 이전을 말한다)에 상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별표 3 제3호 본문 중 “받은 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”를 “받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한 후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”로 한다.

별표 4 제2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. 법 제50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98조제1항제3호의2	
1) 1차 위반한 경우		1,500만원
2) 2차 위반한 경우		2,000만원
3) 3차 이상 위반한 경우		3,000만원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의4]

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(제23조의5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써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합산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.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.

- 1) 위반행위가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
- 2) 위반행위가 단순착오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횟수별 처분기준	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	4회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50조의6 제1항제1호	지정 취소			
나. 법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0조의6 제1항제2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 취소
다. 법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0조의6 제1항제3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 취소

우					
라.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	법 제50조의6 제1항제4호	지정 취소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3조의3(정당한 권리의 전자적 표시방법) ① 법 제50조제2항 단서와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”이란 기호·부호·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디지털매체 형태의 비디오물이나 온라인 비디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에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.</u> <u>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3조의4(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)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(이하 “자체등급분류사업자”라 한다)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</u>

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
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첨부하여 제33조의4제1호에 따
라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
업무를 위탁받은 영상물등급위
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
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
계획

2. 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
따른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
계획

3. 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에
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
인할 수 있는 자료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
영상물등급위원회는 「전자정
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
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
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
한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 자체
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
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
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
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
다.
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
2. 사업자등록증

③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3조의4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 제50조의3제4항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

2. 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3. 법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④ 제33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

“업무를 위탁받은 영상물등급 위원회”라 한다)는 법 제50조의 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·재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업무를 위탁받은 영상물등급 위원회는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·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

2. 지정일자, 지정기간 및 지정번호

⑥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27조(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)

① · ② (생 략)

③ 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37조에 따라 표시한 사항 외에 별표 3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

⑦ 업무를 위탁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제1호 · 제2호 및 제3항제1호의 계획 작성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5(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

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) ①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27조(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)
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 제공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는 ----
--- 별표 3-----

야 한다. 다만, 중복되는 사항이
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
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<신 설>

----- . <단서 삭제>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3조의4(권한의 위탁) 문화체육
관광부장관은 법 제92조제2항
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
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.

1.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
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업무

2.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
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업
무

3.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
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
소 및 업무정지 업무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437